

행정절차론 핵심요약집(이준희) p.36	
수정 전	2. 의견제출 (1)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~ ② 해당 공표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
수정 후	2. 의견제출 (1)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~ ② 해당 공표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

행정절차론 핵심요약집(이준희) p.48	
수정 전	5. 부분공개 (2) 권리구제 ① 이의 신청 ㉠ 청구인은 부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
수정 후	5. 부분공개 (2) 권리구제 ① 이의 신청 ㉠ 청구인은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

행정절차론 핵심요약집(이준희) p.50	
수정 전	3. 이의신청 (2) 심의회 개최 ~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 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(3) 이의신청의 결정기간 ~ 그 결과를 청구인 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청구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(4) 통지의무 ~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 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~
수정 후	“청구인”을 “제3자”로 변경

행정절차론 핵심요약집(이준희) p.56	
수정 전	3.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(시행일 미지정)
수정 후	“(시행일 미지정)” 삭제

행정절차론 핵심요약집(이준희) p.92	
수정 전	2. 고액.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(3) 절차 ① 행정청의 감치 신청 결정 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수정 후	① 감치 결정 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수정 전	3. 모바일 주민등록증 <※ 시행령 개정으로 단문 변경>
수정 후	<p>3. 모바일 주민등록증 <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></p> <p>(1) 신청 및 발급</p> <p>① 신청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.</p> <p>② 발급 신청을 받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수 있다.</p> <p>(2) 재발급 신청 사유</p> <p>①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된 경우(의무)</p> <p>②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 또는 성명, 생년월일, 성별이 변경된 경우(의무)</p> <p>③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이나 훼손</p> <p>④ 그 밖에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(3) 수수료등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,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(4) 유효기간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·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</p>